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2011년도 평창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내용을 변경코자하는 것으로 토지교환으로 처분할 토지는 2필지 221,310㎡ 749,399천원이고, 교환취득할 토지는 14필지 4,676㎡ 689,366천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취약한 대관령 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추진코자하는 것임**

▷ 대관령면 수하리 산38-35번지 외 1필지(군유재산) 221,310㎡를 749,399천원에 처분하고 같은면 횡계리 613-133번지 외 13필지(사유재산) 4,676㎡를 689,366천원에 매입코자함

3. 첨부자료

가.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안 1부.

나.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관계법령 발췌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총괄표]

(단위: 건, ㎡,천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7	37,184	7,607,095	8	41,860	8,296,461	1	4,676	689,366
		건물	2	5,721.36	3,557,273	2	5,721.36	3,557,273			
		기타									
	매입	토지	7	37,184	7,607,095	7	37,184	7,607,095			
		건물	1	4,621.36	1,457,273	1	4,621.36	1,457,273			
		기타									
	교환	토지				1	4,676	689,366	1	4,676	689,366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1	1,100	2,100,000	1	1,100	2,100,000			
		기타									
처분	합계	토지	1	2,024.1	72,864	2	223,334,.1	822,263	1	221,310	749,399
		건물									
		기타									
	매각	토지	1	2,024.1	72,864	1	2,024.1	72,864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221,310	749,399	1	221,310	749,399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교환대상 토지조서

□ 교환으로 **처분**할 토지조서(대관령면 수하리)

이용상황	지번	지목	지적(㎡)	교환면적(㎡)	공시지가(원)	평가금액(원)	소유주
목장지역 (초지)	수하리 산38-35	목장	171,565	171,565	3,330	571,311,450	평창군
	수하리 산38-52	목장	49,745	49,745	3,580	178,087,100	평창군
합계	2필지		221,310	221,310		749,398,550	

□ 교환으로 **취득**할 토지조서(대관령면 횡계리)

이용상황	지번	지목	지적(㎡)	교환면적(㎡)	공시가격(원)	평가금액(원)	소유주
임	횡계리 613-105	임	333	333	36,300	12,087,900	평창축협
임	횡계리 613-106	임	333	333	36,300	12,087,900	평창축협
임	횡계리 613-107	임	103	103	36,300	3,738,900	평창축협
임	횡계리 613-119	임	567	141	36,300	5,118,300	평창축협
임	횡계리 613-120	임	329	329	36,300	11,942,700	평창축협
임	횡계리 613-121	임	330	330	36,300	11,979,000	평창축협
임	횡계리 613-122	임	329	164	36,300	5,953,200	평창축협
임	횡계리 613-128	임	203	203	36,300	7,368,900	평창축협
잡	횡계리 613-129	대	660	660	288,000	190,080,000	평창축협
잡	횡계리 613-130	임	512	512	90,700	46,438,400	평창축협
잡	횡계리 613-131	임	65	65	242,000	15,730,000	평창축협
건물부지	횡계리 613-132	임	186	186	254,000	47,244,000	평창축협
건물부지	횡계리 613-133	대	1,067	1,067	288,000	307,296,000	평창축협
잡	횡계리 613-137	임	250	250	49,200	12,300,000	평창축협
	14필지		5,267	4,676		689,365,200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대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교환 변경 계획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취약한 대관령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주)팜수하의 그린테마파크 사업부지의 토지교환을 추진하던중
○ 강원권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존 초지(7만평)이내로 교환면적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코자 관광인프라 구축 토지교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의2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2010. 4월)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12조, 제42조, 제43조(처분의 제한)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평창군 기업및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조(기업유치의 의무)

2 추진방침

○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대관령지역 관광 활성화
○ 용평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등과 연계한 시내 관광거점지역 확보
○ 국제화를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테마파크 사업부지(군유지)와 토지 교환
○ 그린테마파크 조성(투자유치)으로 연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부지확보의 필요성

○ 교환대상 부지는 대관령의 주요 관광지인 용평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양떼목장, 삼양목장, 신재생에너지관 등이 소재하고,

○ 2017년까지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41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대관령이라는 명칭은 백두대간중 영동과 영서를 잇는 관문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높음.

○ 동계올림픽이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되고 제2영동고속도로 확장과 원주~강릉간 복선철도가 완공되면 대관령지역 관광객수가 더욱 늘어나 관광인프라 시설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4 부지확보(교환) 변경계획

가. 교환토지 변경내용

구 분		위 치	면적	공시지가 (천원)	소유주
교환으로 **처분**할 토지	당초	대관령면 수하리 산38-35번지 등 14필지	519,942㎡	1,609,233	평창군
	변경	대관령면 수하리 산38-35번지 등 2필지	221,310㎡	749,399	평창군
교환으로 **취득**할 토지	당초	대관령면 횡계리 613-134번지 등 41필지	20,375㎡	1,628,152	5명 (축협외 4명)
	변경	대관령면 횡계리 613-133번지 등 14필지	4,676㎡	689,365	1명(평창축협)

※ 교환대상 토지 세부조서 : 「별첨 1」

나. 사업부지 변경내용

○ 당초(2011년)

구분	군유지 처분	군유지 취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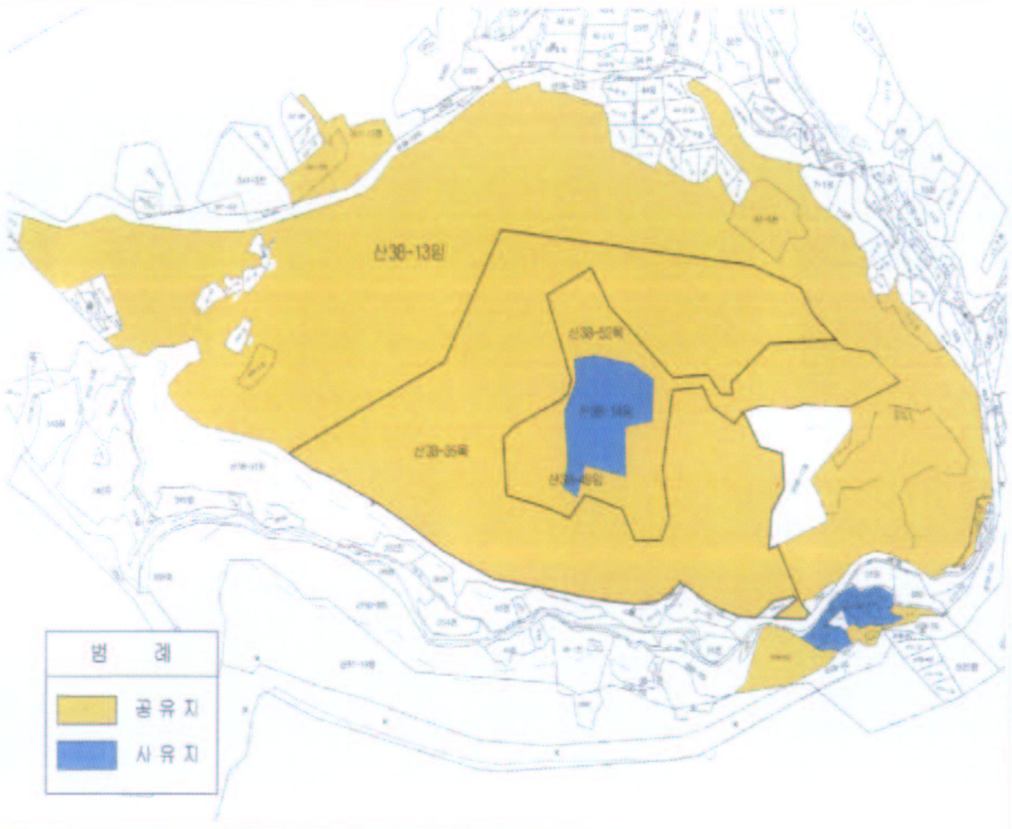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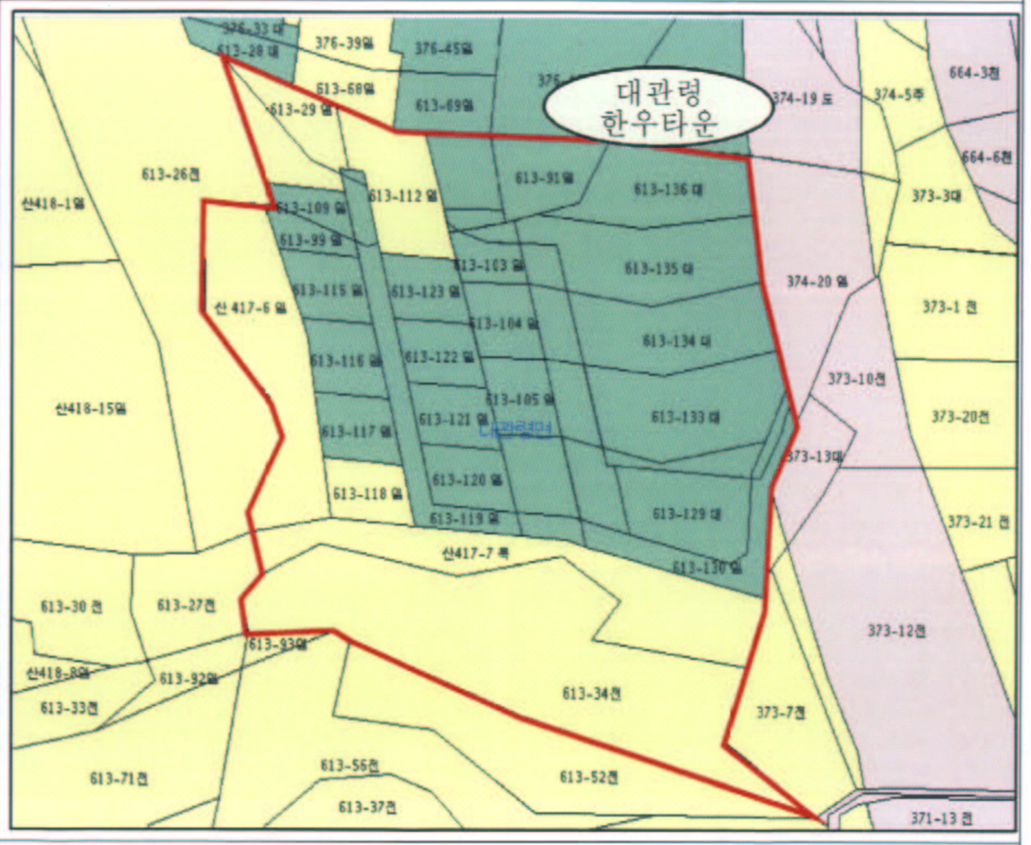
위치	대관령면 수하리 산38-35번지 등 14필지	대관령면 횡계리 613-134번지 등 41필지)
면적	519,942㎡(157,282평)	20,375㎡(6,163평)
가격	1,609,233,508원(공시지가 기준)	1,628,152,600원(공시지가 기준)

○ 변경

구분	군유지 처분	군유지 취득 취득재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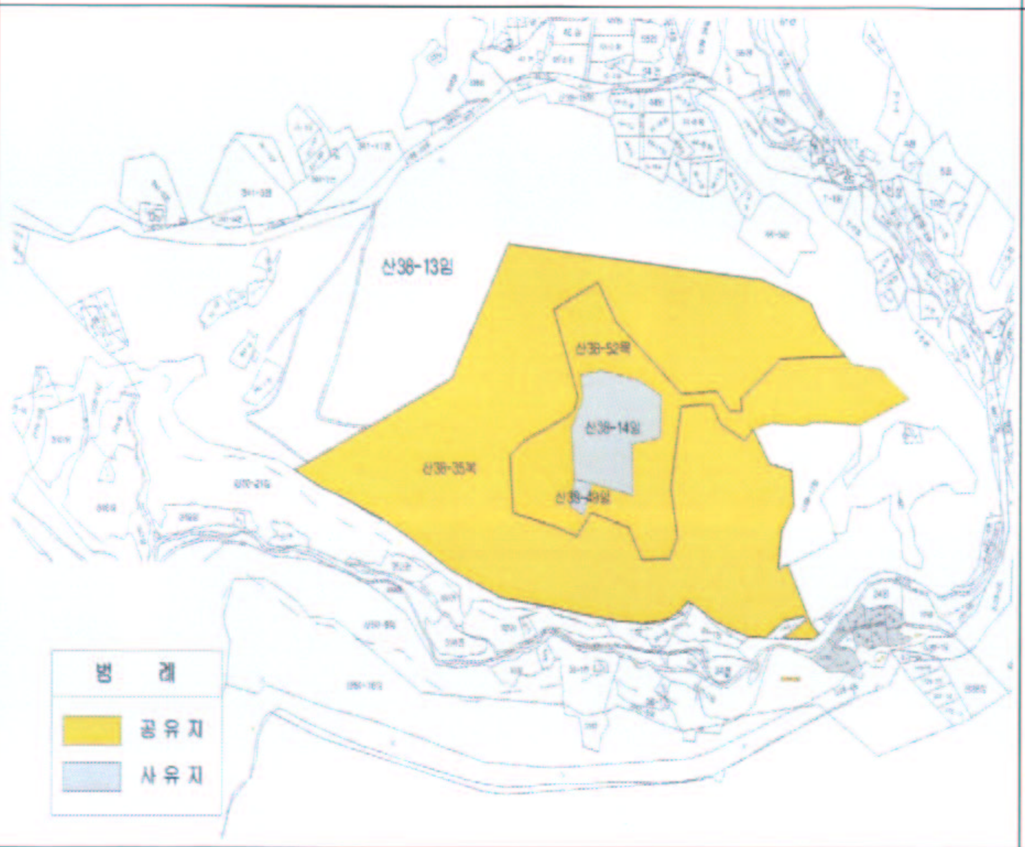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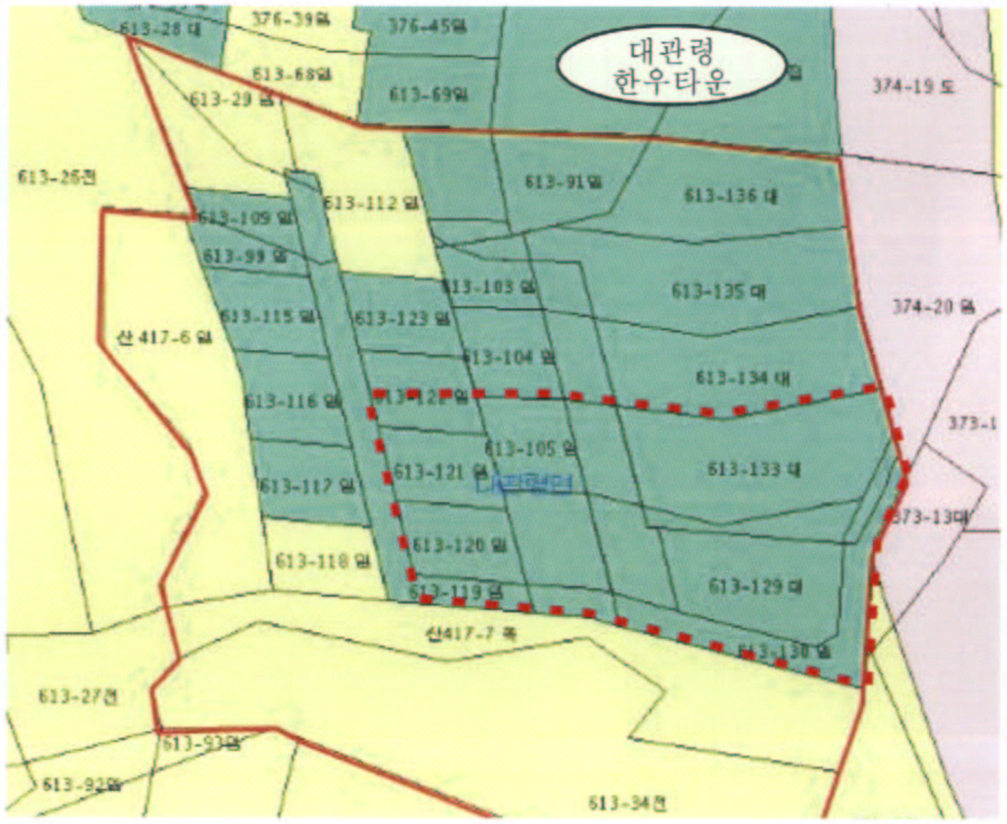
위치	대관령면 수하리 산38-35번지 등 2필지	대관령면 횡계리 613-133번지 등 14필지)
면적	221,310㎡(66,946평)	4,676㎡(1,414평)
가격	749,398,550원(공시지가 기준)	689,365,200원(공시지가) *처분재산의 92%수준

구분	처분재산 군유지 처분 팜수하 소유	당초계획 군유지 취득 취득재산
위성 사진		

다. 교환토지 입지여건

○ 대관령면 수하리 산38-35번지 일원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혼합된 군유지로 전체면적 22ha는 이미 초지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 교환을 통해 취득할 횡계리 613-134번지 일원은 대관령한우타운 옆 축협소유 및 사유지로 횡계 우회도로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로 향후 활용성이 높은 토지임.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유지의 평가금액은 749,399천원이고 교환대상토지의 평가금액은 689,365천원으로 교환대상 토지의 가격이 4분의 3이상을 충족(92%)시킴.

라. 부지활용(관광인프라 구축)계획

○ 만남의 광장 및 여행자 정보센터 기능

- 관광객 도착 및 출발 등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 관광·숙박·교통 및 주요관광지 정보 제공
- 문화관광해설사 · 관광안내원 배치 및 향후 시티투어(City-tour) 출발장으로 활용가능

○ 동계올림픽 홍보센터 설치·운영

- 평창군 스키 역사 및 동계올림픽 유치과정 홍보, 동계올림픽을 찾는 관광객의 정보제공 등 편의시설로 활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전시 및 판매장소 활용

○ 세부적인 활용계획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활용은 별도 용역발주 계획(주민의견 수렴 등)

○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건축물 조성

○ 소요예산은 정부 및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예산지원 요청

5 토지교환 기준 및 절차

○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함

-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 교환대상 재산의 일방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함

○ 교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함.(감정평가기관 선정은 쌍방이 합의 선정)

○ 교환 취득 및 처분 제한사항 준수

○ 교환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차액은 금전(일시불)으로 납부

○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각자 재산에 대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6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2012. 10월)

○ 토지교환 사전설명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2012. 10월)

○ 교환토지 감정평가(2012. 11월)

○ (주)팜수하에서 부지매입 후 군유지와 교환 (2012. 12월)

○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 2013 ~ 2015년

「별첨 1」

교환대상 토지(변경)조서

□ 교환으로 **처분**할 토지조서(대관령면 수하리)

○ 당초

이용계획	지번	지목	지적(㎡)	교환면적(㎡)	공시지가(원)	평가금액(원)	소유주
목장지역	산38-35	목장	171,565	171,565	2,740	470,088,100	평창군
	산38-52	목장	49,745	49,745	2,940	146,250,300	평창군
산림	산38-13	임야	253,629	253,629	588	149,133,852	평창군
	7-5	전	2,101	2,101	16,900	35,506,900	평창군
	22-4	전	1,098	1,098	20,200	22,179,600	평창군
주차장	341-2	전	3,547	3,547	25,600	90,803,200	평창군
	341-11	전	6,100	6,100	25,900	157,990,000	평창군
시설배치	7-6	전	15,479	15,479	23,200	359,112,800	평창군
	342-2	전	1,532	1,532	16,300	24,971,600	평창군
	44-5	전	6,429	6,429	19,900	127,937,100	평창군
	7-7	대	455	455	33,600	15,288,000	평창군
진입로 (하단)	26-1	임야	1,632	1,632	517	843,744	평창군
	26-2	임야	269	269	22,300	5,998,700	평창군
	산28-5	임야	6,361	6,361	492	3,129,612	평창군
합계	**14필지**		**519,942**	**519,942**		**1,609,233,508**	

○ 변경

이용계획	지번	지목	지적(㎡)	교환면적(㎡)	공시지가(원)	평가금액(원)	소유주
목장(초지)	산38-35	목장	171,565	171,565	3,330	571,311,450	평창군
	산38-52	목장	49,745	49,745	3,580	178,087,100	평창군
합계	2필지		221,310	221,310		749,398,550	

□ 교환으로 **취득**할 토지조서(대관령면 횡계리)

○ 당초

구분	지번	지목	지적(㎡)	교환면적(㎡)	공시지가(원)	평가금액(원)	소유주
보전관리 계획관리 준보전산지	613-136	대	831	831	191,000	158,721,000	평창축협
	613-135	대	1,048	1,048	202,000	211,696,000	평창축협
	613-134	대	935	935	251,000	234,685,000	평창축협
	613-133	대	1,067	1,067	262,000	279,554,000	평창축협
	613-132	임	186	186	217,000	40,362,000	평창축협
	613-131	임	65	65	207,000	13,455,000	평창축협
	613-130	임	512	512	82,500	42,240,000	평창축협
	613-129	대	660	660	262,000	172,920,000	평창축협
	613-137	임	250	250	39,700	9,925,000	평창축협
	613-128	임	203	203	31,800	6,455,400	평창축협
	613-127	임	183	183	27,300	4,995,900	평창축협
	613-100	임	105	105	23,200	2,436,000	평창축협
	613-91	임	466	466	132,000	61,512,000	평창축협
	613-101	임	315	315	25,300	7,969,500	평창축협
	613-102	임	68	68	23,200	1,577,600	평창축협
	613-126	임	56	56	23,200	1,299,200	평창축협
	613-125	임	3	3	23,200	69,600	평창축협
	613-103	임	198	198	23,200	4,593,600	평창축협
	613-104	임	327	327	26,900	8,796,300	평창축협
	613-105	임	333	333	31,800	10,589,400	평창축협

보전관리 계획관리 준보전산지	613-106	임	333	333	31,800	10,589,400	평창축협
	613-107	임	103	103	31,800	3,275,400	평창축협
	613-123	임	329	329	23,200	7,632,800	평창축협
	613-122	임	329	329	31,800	10,462,200	평창축협
	613-121	임	330	330	31,800	10,494,000	평창축협
	613-120	임	329	329	31,800	10,462,200	평창축협
	613-119	임	567	567	31,800	18,030,600	평창축협
	613-110	임	98	98	23,200	2,273,600	평창축협
	613-111	임	15	15	23,200	348,000	평창축협
	613-109	임	170	170	23,200	3,944,000	평창축협
	613-99	임	165	165	15,800	2,607,000	평창축협
	613-115	임	335	335	26,200	8,777,000	평창축협
	613-116	임	346	346	31,800	11,002,800	평창축협
	613-117	임	330	330	31,800	10,494,000	평창축협
소계	34필			11,590		1,384,245,500	
보전관리 계획관리 준보전산지	613-112	임	703	703	25,500	17,926,500	염돈설
	613-29	임	334	334	39,700	13,259,800	박종민
	613-108	임	310	310	30,000	9,300,000	박종민
	613-118	임	330	330	31,800	10,494,000	정명희
	산417-6	임	1,466	1,466	10,300	15,099,800	김진숙
	613-34	전	3,834	3,834	41,100	157,577,400	민주식
	산417-7	목장	1,808	1,808	11,200	20,249,600	민주식
소계	7필			8,785		243,907,100	
합계	41필지			20,375		1,628,152,600	

○ 변경

구분	지번	지목	지적(㎡)	교환면적(㎡)	공시지가(원)	평가금액(원)	소유주
보전관리 계획관리 준보전산지	613-105	임	333	333	36,300	12,087,900	평창축협
	613-106	임	333	333	36,300	12,087,900	평창축협
	613-107	임	103	103	36,300	3,738,900	평창축협
	613-119	임	567	141	36,300	5,118,300	평창축협
	613-120	임	329	329	36,300	11,942,700	평창축협
	613-121	임	330	330	36,300	11,979,000	평창축협
	613-122	임	329	164	36,300	5,953,200	평창축협
	613-128	임	203	203	36,300	7,368,900	평창축협
	613-129	대	660	660	288,000	190,080,000	평창축협
	613-130	임	512	512	90,700	46,438,400	평창축협
	613-131	임	65	65	242,000	15,730,000	평창축협
	613-132	임	186	186	254,000	47,244,000	평창축협
	613-133	대	1,067	1,067	288,000	307,296,000	평창축협
	613-137	임	250	250	49,200	12,300,000	평창축협
합계	14필지		5,267	4,676		689,365,200	

「별첨 2」

지적도 및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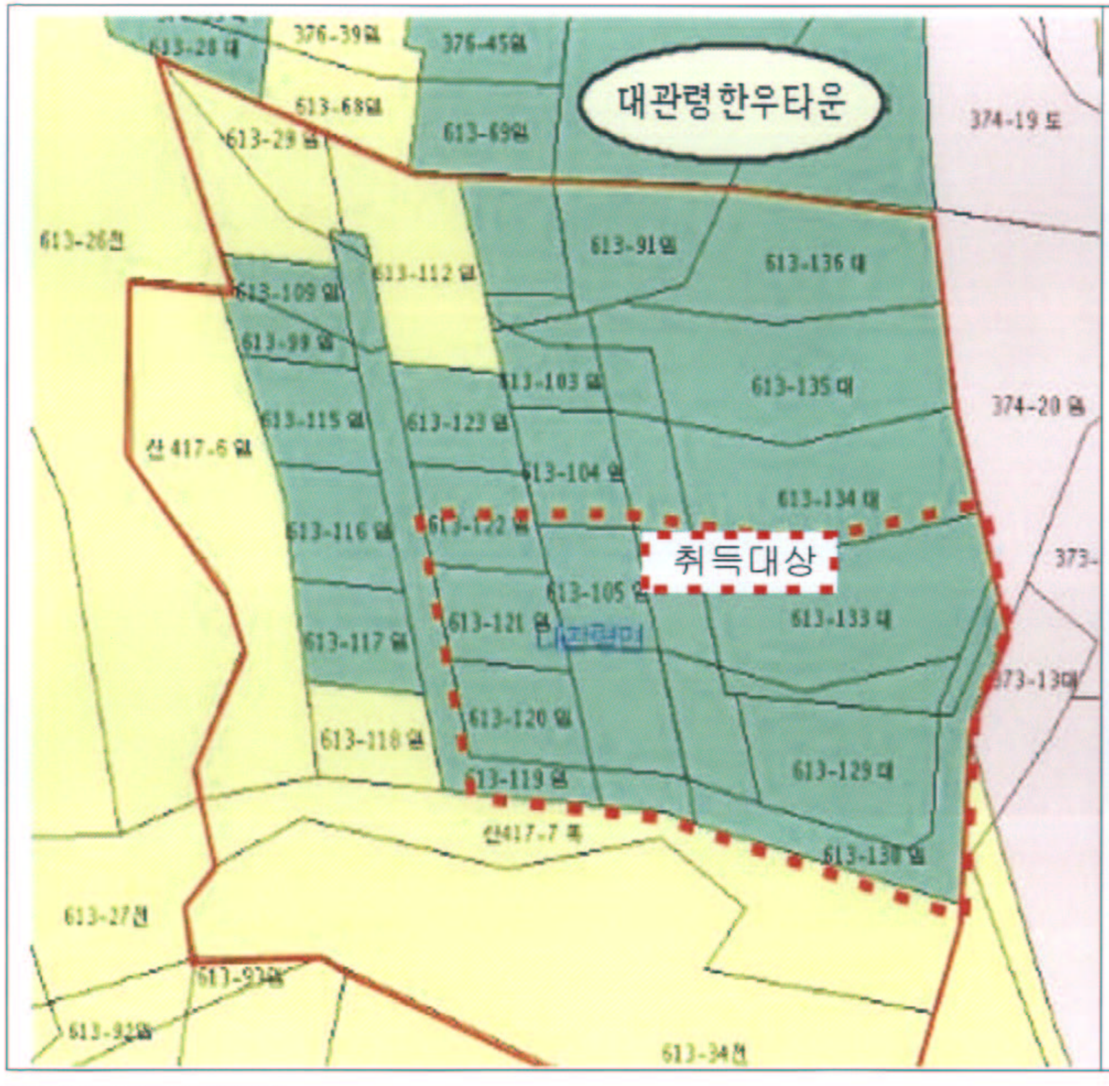

녹색 : 축협소유　　노랑색 : 사유지

관 련 법 령 발 췌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8.4]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2010.4)」

가 교환 기준

1)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지의 집단화로 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산

3)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함

가)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나)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건물, 집합건물 등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다) 양 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이 건물(공작물 · 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라) 다만,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함

4) 교환대상 재산의 일방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함

○ 다만,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시는 가격의 제한이 없음

나 유의 사항

1) 교환취득 금지

가) 사권이 설정된 재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라)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용·공공용 등 행정목적이 아닌 경우

2) 교환처분 제한

가)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나) 장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함

4) 행정재산의 교환기준은 일반재산의 교환조건에 준하여 처리함

라.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0.17>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6.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항 생략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바.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3조(기업유치 의무) 군수는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